

◇개정이유

건설기계 수급조절을 위하여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이내로 명확히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사업자가 지켜야 할 임의적 정비행위 금지, 매매 계약 시 정보제공 등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건설기계사업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등 합리적인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여 건설기계사업자의 일탈을 방지하는 한편, 건설기계의 수출이행 신고 의무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건설기계 사업자나 소유자 등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한 등록제한 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으로 제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1항, 같은 항 단서 신설).
- 나. 건설기계의 제작자들은 건설기계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건설기계의 제작자등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결함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 다. 건설기계사업자인 대여업자, 정비업자, 매매업자, 폐기업자가 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각각의 의무를 정하고, 건설기계의 폐기절차를 정함(제25조제2항 삭제, 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 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위법행위 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하여야만 다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3항 삭제, 안 제35조의2 신설).
- 마.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을 한 사람의 수출이행 신고의무를 이 법 공포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함(안 부칙 제4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1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 향 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장 권 도 업

●법률 제11056호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의 제목 중 “업무정지”를 “업무정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용역 수행의 결과물이 잘못 작성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감리”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공사의 감리”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를 “고의 또는 과실로”로, “부실벌점(不實罰點)을 주어야 한다”를 “벌점을 주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감리전문회사(「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제21조의4제2항 중 “부실벌점”을 각각 “벌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실벌점을 준 경우”를 “벌점을 준 경우”로, “부실벌점을 종합관리하여야”를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벌점을 공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를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양도 또는 법인 간 합병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의营业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감리전문회사의營業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營業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의 통보와 그에 따른 처분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6조의4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시·도지사”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의 통보와 그에 따른 처분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6조의4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제3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의4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원의 업무의 정지를 책임감리등의 발주청에 통보한 경우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의4의 개정규정 중 “고의 또는 과실로”의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 ② 제21조의4의 개정규정 중 벌점 공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측정기관의 장이 책정한 벌점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감리원증을 발급받은 감리원은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감리원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감리원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업자 등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벌점을 부과하며, 건설업자 등에 대한 벌점을 공개하여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시공이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리원의 관리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인정하며, 감리전문회사와 감리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가 업무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를 인가·허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실을 처분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의4제4항, 제30조제4항 및 제33조제2항 신설).

- 나.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용역수행의 결과물이 잘못 작성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설계 등 용역을 실시한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안 제20조의4제2항 신설)
- 다.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부실벌점’이란 용어를 ‘벌점’으로 단순화하며, 건설업자 등에 대한 벌점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21조의4).
- 라. 감리원의 관리권한과 업무정지 처분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국토해양부장관만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제1항, 제28조의2제1항 및 제33조제1항).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1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 권 도 업

● **법률 제11057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②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64조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